

문서번호 : 리테일마케팅본부-2025-N45

2025.06.13
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
제 목 :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 공시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펀드명:

- 하나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- 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
나. 내역:

펀드명	종목명	매매일자	매매구분	매매수량	단가	매매금액	자산총액	통화
				(주,좌)	(현지통화)	(백만원)	비중	
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	AMERICAN TOWER CORP	2025-06-10	처분	980	213	285	0.47%	USD
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	HomeCo Daily Needs REIT	2025-06-11	취득	258,935	1	300	0.49%	AUD
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	DEXUS/AU	2025-06-12	취득	27,537	7	171	0.28%	AUD
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	Charter Hall Retail REIT	2025-06-12	처분	4,984	4	18	0.03%	AUD
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자	HEALTHPEAK PROPERTIES INC	2025-06-12	처분	934	18	22	0.51%	USD

* 상기 매매내역은 모두자산신탁 펀드의 매매 내역임.

다. 근 거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6호 나

자본시장법

제89조(수시공시)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 <2009. 2. 3., 2011. 8. 4.>

시행령

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<개정 2009. 2. 3., 2010. 6. 11., 2015. 10. 23., 2017. 5. 8.>

6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나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끝.

하나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김 태 우



수신처: DB금융투자, IBK투자증권, IM증권(구.아이투자증권), KB증권, NH농협은행, NH투자증권, SK증권, 광주은행, 교보생명보험, 교보증권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부국증권, 삼성증권, 수협은행, 신한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프스증권, 한화투자증권, 현대증권